

『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16일

나. 발 의 자 : 윤종호, 권재욱, 송용자, 양진오, 장세구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6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윤 종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방범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종 우

○ 본 「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가정의 범죄노출을 막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